

원흥성광교회 교육국 운영규정

Ver.0. 2024.01.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은「기독교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 교육국」(이하「본교」)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140 연세프라자 2층(도내동 961) 기독교 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교의 설립목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성경과 이에 입각한 신앙원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2. 교회 성도들의 다음세대와 교회 주변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3.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양성한다.
4.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확신과 영적 성장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운영한다.

제4조 [별도 하위 규칙의 제정] 교육국내 각 부서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본 규정과 합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주요사역

제5조 [구성] 본교는 교육위원회,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각 부) 및 교육훈련부를 둔다.

제6조 [교육위원회]

- ① 교육위원회는 본교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공동행사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 외에 교육국장 또는 담당 교역자가 의뢰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 ② 교육국장, 담당교역자, (각부)교역자, (각부)부장을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담임목사가 위촉한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임을 둔다.
 1. 위원장(국장 겸임)
 2. 교육담당 교역자, 각부 지도교역자, 각부 부장
 3. 교육간사(필요시 교육국 총무·서기·회계)
- ③ 교육활동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국장 주관하에 교육담당 교역자, 담당교역자, 각부 부장으로 구성되는 교육국 회의에 위임한다.

제7조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 ① 각 직임의 임명절차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장은 담임목사가 겸임(또는 임명)하며 본교를 대표하고 각 부서의 운영을 지도, 협력한다.

2. 교육담당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위임으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교사의 양성 및 훈련, 각부 교역자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지도 조언을 담당한다.
3. 교육국장은 장로회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교육담당 교역자와 협력하여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대,내외 협의활동, 부장 임명을 위한 추천, 각부 교육활동의 중재 및 조정, 각부 통합 교육활동의 추진, 각 부서 간의 협력, 재정·행정적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을 총괄한다.
4. 각 부 부장은 교육국장과 교육담당 교역자의 추천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담당교역자와 협의하여 각 부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운영 책임을 진다.
5. 각 부 지도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소관 부서의 부장과 협력하여 교육, 설교 및 지도사역을 담당한다.
6. 각 부 총무, 서기, 회계는 교육담당 교역자와 각 부 지도교역자, 각 부 부장의 추천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부장과 협력을 통해 각부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사(정교사, 보조교사) : 정교사와 보조교사는 부장과 지도교역자의 추천으로 교장이 임명하며, 해당반의 담임 또는 부담임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신앙성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며, 은사에 따라 부서의 각종 사역을 지원한다.

②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각 직임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고 매년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조직을 심의하여 중직자회, 사무처리회에서 승인한다. 임기도중 궐위로 보충된 직임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부서조직]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는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의 정규교육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부서로 구성한다.

1. 영·유아·유치부 2. 아동부(유년부, 초등부) 3. 청소년부(중등부, 고등부)
4. 대학·청년부 5. 장년부(성서대학 외) 등

제9조 [교사의 구분과 자격]

- ① 교사는 무보수 봉사로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분을 통칭하며 정교사와 보조교사, 간사로 구분한다.
- ② 정교사는 우리 교회 등록 성도로서 침례(세례)를 받은자, [본교 교사대학을 졸업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사 명부에 등록된 자_예정]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부장 또는 지도교역자의 추천으로 교장이 임명한다.
- ③ 보조교사는 우리 교회 등록 성도로서 정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사의 사명감을 가진 자 중에서 부장 또는 지도교역자의 추천으로 교장이 임명한다.
- ④ 영·유아·유치·아동부(유년·초등부) 교사는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중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청소년부(중·고등부) 교사는 만 22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 중 구원의 확신이 있는자로 한다. 필요시 예외를 인정한다.
- ⑤ 정교사만이 임원이 될 수 있으며, 교사(정,보조)는 표창대상이 될 수 있고, 교사 근속은 교사 봉사일자로 부터 기산한다.

- ⑥ 교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임명한다. 임기도중 결원으로 보충된 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재임명되고, 재임명의 경우 매년 임명장 수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 주요사역

① 예배

1. 각 부 예배시간(영.유아.유치부_오전 10시, 아동부_오전 10시, 청소년부_오전12시, 대학.청년부_오전 13시30분, 필요시 변경 가능)에 맞춰 연령별에 맞는 찬양, 설교, 공과공부 및 2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섬기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새벽(또는 저녁)기도회를 통하여 새해 학기가 시작될 때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과 교육 및 수련회

1. 매년 교회 전체 주제에 맞춘 내용을 선별(또는 각 부별 선정 공과 등) 각 연령별 수준에 맞춰 진행한다.
2. 겨울수련회, 여름수련회를 통해 집중하여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과 찬양, 공동체가 하나되는 신앙수련회를 진행한다.

③ 교사대학 및 교사대학원 운영(필요시)

1. 연간 1~2회 교사대학 및 교사대학원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사의 지속적인 실력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대학원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3. 각 부서별 필요에 맞춘 심화된 교육과 세미나를 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④교사위로회 및 기도회

1. 한해 동안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더욱 성숙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하는 교사위로회 등을 진행한다
2. 매 주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의 필요와 교사와 학생들의 영성을 위해 중보적 기도회를 진행한다.

제 3 장 상 별

제11조[교사의 포상]

- ① 교장은 교사로 봉사한 자 중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상을 담임목사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모범상 등

- ② 공로상은 교사 중 열심히 봉사하여 교회나 본교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시상한다.

- ③ 근속상은 만 5년, 만 10년, 만 15년, 만 20년 등 5년 단위로 연속 근속한 자에게 시상한다.

- ④ 모범상은 교사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생활과 인격과 봉사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모

범이 되는 자에게 시상한다.

제12조 [학생의 포상]

- ①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우수한 자에게는 각 부의 추천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각 부서장과 교장의 연명으로 다음 각 호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우등상 2. 전도상 3. 개근상 4. 봉사상 등
- ② 우등상은 교회 예배 및 성경공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한다.
- ③ 전도상은 전도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한다.
- ④ 개근상은 교회 출석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한다.
- ⑤ 봉사상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특별한 선행고 봉사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
- ⑥ 본교 재학 중 각종 행사 또는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부서장이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위원 및 교사의 징계] 다음 각 호와 같은 행동으로 교회와 본교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한 교육위원이나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제소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직, 제명, 제적시킬 수 있다.

1. 이단사설(異端邪說)이나 교회의 신앙노선에 위배되는 조직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전파한 자.
2.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
3. 무단으로 5회 연속, 또는 교사로서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일 봉사에 결근이 잦은 자

제 4 장 운 영 규 칙

제14조 [단계별 연령]

- ① 본교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아동들의 연령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아부 :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2. 유아부 : 만 4-5세의 어린이 (필요시 구분)
 3. 유치부 : 만 6~7세의 어린이 (필요시 구분)
 4. 아동부 : 초등학교 1학년~6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
 5. 청소년부 :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
 6. 대학.청년부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만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
 7. 장년부 : 만 40세 이상의 장년

제15조 [교육목표, 교육계획, 교과과정, 공과 및 교재]

- ① 중장기 및 연간 교육목표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과 지도에 따라 설정하고 매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연간 교육목표는 중장기 교육목표와 연간 목회계획을 반영하여 교육담당 교역자 주관으로 담당 교역자들이 협의하여 설정한다.
- ③ 각 부별 교육계획은 중장기 교육목표, 연간교육목표를 반영하여 담당교역자와 부장

이 협의하여 수립한다.

- ④ 본교의 각부 교과과정 및 공과 교재는 지도교역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되, 가급적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것을 우선 고려한다.

제16조 [수업 연한] 본교의 각 부서별 수업 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부,유치부 : 7년 (필요에 따라 구분)
2. 아동부 : 6년 (유년부와 초등부를 분리할 경우 각 3년)
3. 청소년부 : 6년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할 경우 각 3년)
4. 청년부 : 수업 연한을 두지 않는다.
5. 장년부 : 수업 연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수업일수] :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각 부서별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주일 예배 및 성경공부 : 연 50일 이상 (여건에 따라 예외 인정)
- ② 성경학교, 수련회 등 행사일 : 연 3일 이상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제18조 [수업기간 및 학기] 본교의 수업기간은 매년 1월 첫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로 하고 1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구분한다.

1. 제 1학기 : 1월 - 6월
2. 제 2학기 : 7월 - 12월

제19조 [입학] 본교의 입학은 학부모 또는 아동 스스로 자원하여 소정의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입학이 되며 타 교회에서 전입되어 전학하는 자는 전적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가 정 통 기독교 교단이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한다. 필요시 예외를 인정한다.

제20조 [제적] 본교 학생 중 특별한 사유 없이 12주 이상 결석하고 다시 출석할 가망이 없거나 타 교회로 이적한 자로서, 담임교사등이 심방하여 제적 신청서에 제적 사유를 기입하거나 부서장의 결재를 필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제21조 [수료 및 이수] 각 부서에서 학년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졸업증,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졸업증 : 유치부, 아동부(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중등부, 고등부) 등의 3개년 과정으로 구분(6개년 과정도 비례로 적용)된 부서의 경우 초기 2년 과정을 각각 1학기 이상 출석하고 최종학년 1년 중 1학기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한다.
2. 수료증 : 각 부서 1년 과정의 1학기 이상을 출석한 자, 계절학교(여름성격학교, 하기 수련회, 동기수련회 등)를 참석한 자에게 수여한다.
3. 이수증 : 각 부서 1년 과정의 1학기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본인이나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한다.

제22조 [성적평가] 학생의 성적 평가는 각부 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학생교적부] 본교 학생의 교적은 각부 교역자가 본 교회 학생교적부에 기록하고, 수료 또는 졸업시에는 본 교회 교적부로 이관한다.

제 5 장 교사대학 및 교사대학원

제24조 [교사대학]

- ① 본교는 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사대학을 연 1회 이상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사대학 이수과목은 성서대학의 일부 강좌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교육간사는 매 기별 교사 대학 졸업자 명부를 작성, 교사 자격증 일련번호로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본 교회 교적부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 [교사대학원] 본교는 교사의 지속적인 수준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대학원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본교의 임원은 가급적 교사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26조 [세부 학칙] 교사 대학 및 교사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교사대학 및 교사 대학원 운영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제27조 [회의] 본교의 회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사 정기총회 : 매년 1회 12월에 소집하여 교칙 개정발표, 예산 및 내역보고, 교육 실적 및 계획보고, 신 임원 임명 제청 등을 하며 회의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한다.
- ②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장 또는 담당교역자가 소집하며, 본교 운영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토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부서 간 협력 업무를 토의한다.
 2. 교육위원회는 1주일 전 소집공고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교육국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담당 교역자가 소집하여 부서 간 협력 업무를 토의한다.
- ④ 부서별 회의 : 부서별 회의는 각 부 교역자 또는 부장 주관 아래 필요시 소집하여 각 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행정

제28조 [재원 및 현금] 본교의 재정은 교회 예산에서 충당하고 모든 현금은 교회에 입금시킨다. 다만, 계절학교(수련회 등)의 운영은 학생들에게 참가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9조 [회계처리]

- ① 본교 각 부서의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총무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감사 시 제출한다.
 1. 금전출납부 : 각 부서의 교회 지원, 수익자부담금, 찬조금 등 모든 입출금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가급적 통장 입출 내역과 일치시킨다.

2. 통장 : 모든 입출금을 가급적 통장을 경유하도록 한다.
 3. 영수증철 : 금전출납부의 기록 순서대로 영수증을 철한다.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의 경우 부장 또는 각 부 교역자의 확인전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분기별 회계보고서 : 재정위총무국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5. 회계서류철 : 분기별 회계보고서, 행사별 예산 및 결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 ③ 회계원칙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모든 지출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재정총무국장과 협의 후 재정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입안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국장과 협의하고 재정위원장의 허용된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3. 특별행사 기안 시에는 반드시 예산계획을 첨부하되, 고정경비(최소 기준인원 단위)와 가변경비(참석자 수 반영)로 나누어 수립하고, 시행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총무국에 제출한다.
- ④ 매년 10월에는 교육활동별 결산을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총무국에 협의 및 제출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0조 [행정]

- ① 본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보관연한은 각 부서 또는 교회의 기준에 따른다.
1. 학생 신앙기록부 2. 신입생 명부 3. 교사 및 학생 출석부,
 4.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일지 5. 회의록 6. 주보철
 7. 졸업, 수료, 이수자 명부 8. 교사 임면대장(교사경력기록부)
 9. 교사자격 소지자 명부 10. 교육활동계획서철(컴퓨터 파일 포함) 11. 비품대장 등
- ② 각 부서는 매 년도말 연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재정총무국에 제출한다.

제 8 장 부 칙

제31조 [본 규정의 목적과 성격] 본 규정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 다음세대공동체(교회학교) 발전과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며, 본 교회의 다음세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제32조 [세부규정]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육위원회에서 관례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제33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 내에서 수정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직자회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제34조 [발효] 본 규정은 2024년 1월 중직자회의 확정 후 바로 적용한다.